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5.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년 6월 5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19년 6월 11일

라. 상정일자: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2019. 6. 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국장 김인문)

가. 제안이유

-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사용료 감면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를 반영하여 용어 정비(안 제9조)
-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사용료 감면(안 별표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임경태)

-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와 공공 체육시설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활성화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공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9조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별표3에서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음.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공공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민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03 호
----------	---------

제출연월일: 2019. 6.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의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사용료 감면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를 반영하여 용어 정비(안 제9조제2항제2호)

나.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사용료 감면(안 별표 3 비고의 구분란 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2019. 5. 2. ~ 5. 22.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을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별표 2 비고의 구분란 제6호나목 중 “1~3급은”을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별표 3 비고의 구분란 제5호나목 중 “1~3급은”을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하고,

비고의 구분란 제6호 중 “한해 100분의 30을”을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월정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각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사용료의 징수) ① (생략)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개인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u>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u>과 함께 오는 보호자 1명 ③·④ (생략)	제9조(사용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 <u>장애정도가 심한</u> ----- ----- ③·④ (현행과 같음)																																																																																																																																																																																																						
[별표 2] 영등포스포츠센터 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 개인사용료 (단위 : 원) <table><tr><th rowspan="2">사용료구분</th><th rowspan="2">대상</th><th rowspan="2">기본사용료(1회)상한</th><th colspan="6">월 사용료(1시간 기준)</th></tr><tr><th>주1회</th><th>주2회</th><th>주3회</th><th>주4회</th><th>주5회</th><th>주6회</th></tr><tr><td rowspan="3">수영장</td><td>성인</td><td>4,000</td><td>16,000</td><td>32,000</td><td>48,000</td><td>56,000</td><td>64,000</td><td>72,000</td></tr><tr><td>청소년</td><td>3,000</td><td>12,000</td><td>24,000</td><td>36,000</td><td>42,000</td><td>48,000</td><td>56,000</td></tr><tr><td>어린이</td><td>2,500</td><td>10,000</td><td>20,000</td><td>30,000</td><td>35,000</td><td>40,000</td><td>45,000</td></tr><tr><td rowspan="2">골프연습장</td><td>성인</td><td>6,000</td><td colspan="6">월 120,000</td></tr><tr><td>청소년(야간)</td><td>5,000</td><td colspan="6">월 100,000</td></tr><tr><td rowspan="2">체력단련장</td><td>성인</td><td>2,500</td><td colspan="6">월 50,000</td></tr><tr><td>청소년(야간)</td><td>2,000</td><td colspan="6">월 40,000</td></tr><tr><td rowspan="3">체육관</td><td>성인</td><td>3,000</td><td colspan="6"></td></tr><tr><td>청소년</td><td>2,000</td><td colspan="6"></td></tr><tr><td>어린이</td><td>1,500</td><td colspan="6"></td></tr></table>	사용료구분	대상	기본사용료(1회)상한	월 사용료(1시간 기준)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인	4,000	16,000	32,000	48,000	56,000	64,000	72,000	청소년	3,000	12,000	24,000	36,000	42,000	48,000	56,000	어린이	2,500	10,000	20,000	30,000	35,000	40,000	45,000	골프연습장	성인	6,000	월 120,000						청소년(야간)	5,000	월 100,000						체력단련장	성인	2,500	월 50,000						청소년(야간)	2,000	월 40,000						체육관	성인	3,000							청소년	2,000							어린이	1,500							[별표 2] 영등포스포츠센터 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 개인사용료 (단위 : 원) <table><tr><th rowspan="2">사용료구분</th><th rowspan="2">대상</th><th rowspan="2">기본사용료(1회)상한</th><th colspan="6">월 사용료(1시간 기준)</th></tr><tr><th>주1회</th><th>주2회</th><th>주3회</th><th>주4회</th><th>주5회</th><th>주6회</th></tr><tr><td rowspan="3">수영장</td><td>성인</td><td>4,000</td><td>16,000</td><td>32,000</td><td>48,000</td><td>56,000</td><td>64,000</td><td>72,000</td></tr><tr><td>청소년</td><td>3,000</td><td>12,000</td><td>24,000</td><td>36,000</td><td>42,000</td><td>48,000</td><td>56,000</td></tr><tr><td>어린이</td><td>2,500</td><td>10,000</td><td>20,000</td><td>30,000</td><td>35,000</td><td>40,000</td><td>45,000</td></tr><tr><td rowspan="2">골프연습장</td><td>성인</td><td>6,000</td><td colspan="6">월 120,000</td></tr><tr><td>청소년(야간)</td><td>5,000</td><td colspan="6">월 100,000</td></tr><tr><td rowspan="2">체력단련장</td><td>성인</td><td>2,500</td><td colspan="6">월 50,000</td></tr><tr><td>청소년(야간)</td><td>2,000</td><td colspan="6">월 40,000</td></tr><tr><td rowspan="3">체육관</td><td>성인</td><td>3,000</td><td colspan="6"></td></tr><tr><td>청소년</td><td>2,000</td><td colspan="6"></td></tr><tr><td>어린이</td><td>1,500</td><td colspan="6"></td></tr></table>	사용료구분	대상	기본사용료(1회)상한	월 사용료(1시간 기준)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인	4,000	16,000	32,000	48,000	56,000	64,000	72,000	청소년	3,000	12,000	24,000	36,000	42,000	48,000	56,000	어린이	2,500	10,000	20,000	30,000	35,000	40,000	45,000	골프연습장	성인	6,000	월 120,000						청소년(야간)	5,000	월 100,000						체력단련장	성인	2,500	월 50,000						청소년(야간)	2,000	월 40,000						체육관	성인	3,000							청소년	2,000							어린이	1,500						
사용료구분				대상	기본사용료(1회)상한	월 사용료(1시간 기준)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인	4,000	16,000	32,000	48,000	56,000	64,000	72,000																																																																																																																																																																																															
	청소년	3,000	12,000	24,000	36,000	42,000	48,000	56,000																																																																																																																																																																																															
	어린이	2,500	10,000	20,000	30,000	35,000	40,000	45,000																																																																																																																																																																																															
골프연습장	성인	6,000	월 120,000																																																																																																																																																																																																				
	청소년(야간)	5,000	월 100,000																																																																																																																																																																																																				
체력단련장	성인	2,500	월 50,000																																																																																																																																																																																																				
	청소년(야간)	2,000	월 40,000																																																																																																																																																																																																				
체육관	성인	3,000																																																																																																																																																																																																					
	청소년	2,000																																																																																																																																																																																																					
	어린이	1,500																																																																																																																																																																																																					
사용료구분	대상	기본사용료(1회)상한	월 사용료(1시간 기준)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인	4,000	16,000	32,000	48,000	56,000	64,000	72,000																																																																																																																																																																																															
	청소년	3,000	12,000	24,000	36,000	42,000	48,000	56,000																																																																																																																																																																																															
	어린이	2,500	10,000	20,000	30,000	35,000	40,000	45,000																																																																																																																																																																																															
골프연습장	성인	6,000	월 120,000																																																																																																																																																																																																				
	청소년(야간)	5,000	월 100,000																																																																																																																																																																																																				
체력단련장	성인	2,500	월 50,000																																																																																																																																																																																																				
	청소년(야간)	2,000	월 40,000																																																																																																																																																																																																				
체육관	성인	3,000																																																																																																																																																																																																					
	청소년	2,000																																																																																																																																																																																																					
	어린이	1,500																																																																																																																																																																																																					

비 고	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로 한다.
	2. 수영장, 골프연습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3.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2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5.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 을 감면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용료 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1~3급은 장애인과 동반하 는 보호자 1인 포함)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라.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마.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와 자녀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7.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8.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스포츠센터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할 수 있다.

비 고	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로 한다.
	2. 수영장, 골프연습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3.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2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5.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 을 감면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용료 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라.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마.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와 자녀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7.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8.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스포츠센터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할 수 있다.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평일			공휴일 (토요일 포함)			비고
			성인	청소년	어린이	성인	청소년	어린이	
대립 운동장	개인 사용료	테니스장	8,000			10,400			1면 기준 (2시간)
	전용 사용료	축구장	40,000			52,000			1팀 기준 (2시간)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개인 사용료	일일 입장	3,000	2,000	1,500	3,000	2,000	1,500	평일 기준 (3시간)
		월 정기	44,000	27,500	22,000	일일 입장 별도 구매			주말 기준 (2시간)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	130,000			170,000			기본 기준 (2시간)
		체육경기 외 행사	330,000			430,000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장	개인 사용료	일일 입장	3,000	2,000	1,500	4,000	2,500	2,000	실내/실외 이용
		월 정기	성인 40,000, 청소년 30,000, 어린이 25,000						
	전용 사용료	체육 경기	25,000			30,000			1루트 기준(2시간) 개인사용료 별도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평일			공휴일 (토요일 포함)			비고
			성인	청소년	어린이	성인	청소년	어린이	
대립 운동장	개인 사용료	테니스장	8,000			10,400			1면 기준 (2시간)
	전용 사용료	축구장	40,000			52,000			1팀 기준 (2시간)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개인 사용료	일일 입장	3,000	2,000	1,500	3,000	2,000	1,500	평일 기준 (3시간)
		월 정기	44,000	27,500	22,000	일일 입장 별도 구매			주말 기준 (2시간)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	130,000			170,000			기본 기준 (2시간)
		체육경기 외 행사	330,000			430,000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장	개인 사용료	일일 입장	3,000	2,000	1,500	4,000	2,500	2,000	실내/실외 이용
		월 정기	성인 40,000, 청소년 30,000, 어린이 25,000						
	전용 사용료	체육 경기	25,000			30,000			1루트 기준(2시간) 개인사용료 별도

비고	1.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 제5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잔여분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3. 대림운동장 운영시간은 11월~2월은 07:00~18:00, 3월~10월은 06:00~19:00 까지로 한다. 4.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시 전용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가.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 행사 개최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나. 영등포구체육회 소속 종목별 협회 주관행사 등의 개최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단, 협회별 연 1회로 한정한다) 5. 사용료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개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3급은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라.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마.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와 자녀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6.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한해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7.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한다. 8.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 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 할 수 있다.
비고	1.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 제5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잔여분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3. 대림운동장 운영시간은 11월~2월은 07:00~18:00, 3월~10월은 06:00~19:00 까지로 한다. 4.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시 전용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가.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 행사 개최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나. 영등포구체육회 소속 종목별 협회 주관행사 등의 개최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단, 협회별 연 1회로 한정한다) 5. 사용료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개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라.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마.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와 자녀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6.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월정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각각 감면한다. 7.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한다. 8.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 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 할 수 있다.